

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

(앞 쪽)

기본 사항			
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	
대표자의 성명			
최종소비자 판매비중			
산정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등록 직전 사업연도 1년 기준)		
①공급가격 합계액	₩	(금 원정)	(1년간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×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)
②판매가격 합계액	₩	(금 원정)	(1년간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×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)
최종소비자 판매비중	() % (① 판매가격 합계액 ÷ ② 공급가격 합계액) × 100		
본인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, 별표 1 제2호라목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			
대표자의 성명		년 월 일	(서명 또는 인)
공정거래위원회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		귀하	
첨부서류	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(세무조정계산서,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합니다)		

